



제418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8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 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¹⁾를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u>

-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인이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서효원,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2016. 12), 3쪽]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고,²⁾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의무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보다 확실하게 행사·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³⁾

□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

○ 첫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취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해를 수인하라는 친족의 압력 등 친족관계의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들이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친족관계의 특수성에 기하여 형사소추 등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단순히 친족관계만이 존재할 뿐 친족관계가 형사소추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할 수 있는바,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친족관계의 존부라는 단일 요소에 기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2) 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9, 16, 17(병합) 결정

3) 강동범,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2018. 3), 314쪽

4)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함[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등 결정].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